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형입찰 활성화 대비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발주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여 공정성·전문성 및 발주청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발주청 소속직원 과반수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19조제7항)

다.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 (안 제19조제8항)

라.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자격기준 완화 (안 제19조제10항, 별표2)

마.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이 고시하는 사항 준용 (안 제19조제11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22.9.17.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 당 없 음

라. 기 타 : 해 당 없 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 및 제19조, 별표2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400명 이내의 위원

제19조(적용대상 및 범위)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과반수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발주하려는 공사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발주청 소속 과반수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2. 발주청 소속직원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영 제22조 제9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해 소속직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⑩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2를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별표2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하여 발주청이 정한다.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다만, 3급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운영

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부터 제6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0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⑧ (생략)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u>600명</u>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u>300명</u> 이내의 위원 ③ ~ ⑧ (생략)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2. ----- <u>400명</u>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 ⑥ (생략)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50명</u> 이상 <u>7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	제19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50명</u> ----- <u>이상 150명</u> -----

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

⑧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과반수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

1. 발주하려는 공사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발주청 소속 직원 과반수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2. 발주청 소속직원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공정성 및

⑨ (생략) ⑩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2를 <u>준용한다</u>.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정수의 <u>5분의 1</u> 범위에서 별표2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분광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u>필요한 사항</u>은 발주청이 정한다.	<u>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해 소속 직원을 과반수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u>따른다.</u> ----- ----- <u>10분의 3</u> ----- ----- ----- ----- ----- -----. ⑪ ----- ----- ----- <u>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하여</u> -----
--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5급 공무원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다만, 3급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운영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부터 제6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이표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회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라.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연 락 처	(044) 201 - 3565